

#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명: DB 차이나본토 RQFII 증권투자신탁(H) [주식] (펀드코드: B1205)

2. 변경 시행일 : 2023.4.19(수)

### 3. 변경 내용 요약

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. 시행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3.1.1. 시행/ 제 59 조의 3(연금계좌세액공제))

### 4.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 및 주식 보완	- - 주식 보완 <u>*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</u>	- 최근일자 업데이트 - 주식 추가 <u>*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당사는 본부 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글로벌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. 글로벌운용본부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0개, 운용 규모는 0억 입니다.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. 시행)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3.1.1. 시행/ 제 59 조의 3(연금계좌세액공제))
4. 집합투자업자 나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 및 주식 보완	- - 주식 보완 <u>*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</u>	- 최근일자 업데이트 - 주식 추가 <u>*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당사는 본부 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글로벌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. 글로벌운용본부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0개, 운용 규모는 0억 입니다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모집합투자기구 (1)투자대상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⑥ 파생상품 - 단서 추가 ⑧ 증권대여 - 주식 추가 ⑨ 증권차입 - 주식 추가</p>	<p>⑥ 파생상품 - 단서 추가 (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) ⑧ 증권대여 주1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가. <u>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나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 ⑨ 증권차입 주2) <u>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DB 차이나본토 RQFI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투자전략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최근일자 업데이트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위험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</p>	<p>위험 추가</p>	<p><u>증권대차거래 위험</u> <u>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변동성 업데이트</p>	<p><u>변동성: 19.63%</u> <u>(2022.4.1. 기준)</u></p>	<p><u>변동성: 18.10%</u> <u>(2023.4.1. 기준)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업데이트 및 주식 추가</p>	<p>-</p>	<p>- 결산일자 업데이트 - 주식 추가 주8) <u>금융비용 종류 :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,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<u>*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</u>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수령요건 : 55 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. 단,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「소득세법」 제 14조제 3항제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<u>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</p>	<p>- 수령요건 : 55 세 이후 (<u>삭제</u>)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(<u>이하 삭제</u>)</p>

		<p><u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</u></p> <p><u>③(생략)</u>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세액공제]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: <u>(신설)</u></p>	<p><u>②(삭제)</u></p> <p><u>②(종전과 동일)</u>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세액공제]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00 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: <u>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<u>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<u>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	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<u>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 천 500 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
<p>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. 신탁회사 (3) 의무와 책임 - 의무	신탁계약서와의 내용 통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li> <li><u>1. 투자설명서가 법령,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</u></li> <li><u>2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</u></li> <li><u>3.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</u></li> <li><u>4.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</u></li> <li><u>5.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업자의 확인사항</li> <li><u>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</u></li> <li><u>2.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3.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4.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5.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6.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</u></li> <li><u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li> </ul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5)투자신탁의 합병	오기 정정	<p>③(생략)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<u>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</u>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<u>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</u>에 해당할 것</li> <li>~3. (생략)</li> </ol>	<p>③(중전과 동일)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<u>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</u>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<u>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</u>에 해당할 것</li> <li>~3. (중전과 동일)</li> </ol>